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5. 16.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현행 고시규정의 과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고려가 어렵고, 각 단계별로 설정된 부과비율에 있어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적은 반면, 중소기업의 과징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며 과징금의 상한선 설정으로 시장폐해가 큰 대기업의 악성 법 위반에 대한 억제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 고시를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단계별 부과비율 또는 추가금액을 조정하여 과도한 역진율을 완화하고, 획일적이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악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고시에 의한 산출금액이 법 위반 방지·재재목적의 달성을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중한 경우에는 각각 법정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사금융업을 포함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확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5. 2(수) 최근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강압적인 채심추심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사 금융업종」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중요정보고시」제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표시(사업장 게시판 등의 내용)」나 「광고(신문·전단지 등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2001. 5월 현재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의류업, 건강식품

업 등 20개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요정보고시의 개정으로 자금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등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 내용에 반드시 년 단위 환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1. 6. 1.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사업자가 고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존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2001. 6. 1. 이전까지 현행 고시가 계속 적용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과징

금 부과지침을 개정·보완하고,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관행을 개선, 현금성 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결제비율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상정된 과징금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가맹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 지난 4월부터 코리아리서치를 통하여 실시한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점운영 및 거래실태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맹점의 대부분이 소자본과 가족단위(89%)로 운영되고 있어, 가맹사업이 일반서민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사업형태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맹계약기간은 2년 이하의 단기(45%)로써,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사업 희망자의 대부분은 사업경험이 없는 사무직이나 생산직근무자, 주부(60%)들로, 이들이 가맹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과 가맹본부에 의한 정보제공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거래관련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정보공개의 의무화(41%), 전문자격인제도(24%),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규제(17%)를 희망하였으며,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89.3%)와 자문·상담을 위한 전문자격인 제도(86.3%)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관련법의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업계 등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용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8. 2.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동 제도의 폐지 후 계열사의 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내부지분율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심화,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의 실질적 작동의 미흡함 등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00. 4. 동 제도를 부활하였다.

2001. 4. 1.부터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출자한도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로 제한되며, 2001. 4. 1.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해소시한을 유예기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의 조기 완결을 위한 '98. 1. 1.~2001. 3. 31. 기간 중의 구조조정관련 출자, 외자유치촉진 및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출자, SOC투자 활성화를 위한 SOC민자사업에의 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해소를 전제로 예외를 인정하였다.

지주회사 전환 · 설립신고 현황

2001년 4월 이후 (주)LGCI, (주)동원엔터프赖이즈, (주)풍성모터스, (주)원진, 엘파소코리아홀딩(유) 등 총 5개사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설립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이번에 신고된 5개사 및 기존 8개사를 합하여 총 13개이다.

금번 신고된 회사는 모두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합계액 비율이 5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며 화학, 식품,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

LG의 경우 (주)LGCI를 화학중심의 지주회사로 전환, 투명성 제고 및 핵심역량 집중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주)동원엔터프赖이즈의 경우 식품사업과 관련된 동원F&B, 동원정밀, 동원식품 등 3개 회사

를 자회사로 두어 유관사업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지주회사를 활용할 예정이며, 엘파소코리아홀딩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직접 지주회사로 전환한 사례로서 지주회사를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주회사가 구조조정수단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었고,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화·투명화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지주회사전환에 따른 구조조정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주회사 현황 ❖

[단위 : 억원, %, 2001. 5. 현재]

지주회사명	업종	신고일	자산 총계	지주 비율	자회사 현황
SDN	금융	2000. 4. 28	1,551	73.7	2개사 · 세종증권(주), (주)세종기술투자
대한색소공업	안료 제조	2000. 4. 28	525	51.4	2개사 · 대한스위스화학(주), 대한스위스무역(주)
온미디어	미디어 사업	2000. 7. 13	573	100	2개사 ·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주)바둑텔레비전
C&M 커뮤니케이션	케이블 방송	2000. 4. 28	1,254	73.0	13개사 · (주)한국케이블TV강동방송, 경동방송, 노원방송, 동부방송, 동서울방송, 북부방송, 용산방송, 구로방송, 마포방송(주), (주)강동유선방송, (주)대한유선방송, 서울미디어원(주), 우리종합유선방송(주)
SK-에론	가스	2000. 1. 1	5,733	96.1	11개사 · SK가스,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익산에너지
화성사	천일염 제조	2000. 7. 14	372	99.6	1개사 · (주)성담
리타워 테크놀로지	인터넷 관련 사업	2000. 12. 11	1,147	78.7	9개사 · (주)파트랜드, 비즈투비즈(주), (주)리눅스인터넷네셔널, (주)유니컴네트, (주)아이펜텍, (주)마이크로컴, (주)인터피아, (주)KNI SOFT, (주)와바자바
우리금융 지주회사	금융	2001. 2. 13	36,373	100	5개사 ·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하나로종금
(주)LGCI	화학	2001. 4. 13	26,500	77.0	13개사 · (주)실트론, LG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 LGMMA(주), LG-CALTEX정유, (주)LG생활건강, (주)LG화학, LG전자(주), (주)LG-EDS시스템, (주)LG상사, LG건설(주), (주)LG유통, LG전선(주), LG백화점
(주)동원 엔터프라이즈	식품	2001. 4. 24	470	89.3	3개사 · 동원F&B(주), 동원정밀(주), 동원식품
(주)풍성모터스	자동차 부품	2001. 4. 28	559	72.5	2개사 · 덴소풍성(주), 피에스티(주)
(주)원진	내화물 제조	2001. 4. 30	1,275	62.4	6개사 · (주)경동, (주)경동도시가스, (주)경동보일러, (주)원진케이알, (주)원진테크, (주)미진테크
엘파스 코리아홀딩(유)	발전	2001. 4. 24	1,403	99.5	1개사 · 한화종합에너지

100대 국민생활관련 표준약관 제정 구체화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대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기 위하여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도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조직, 인원을 보강키로 하는 등 100대 국민생활관련 표준약관 제정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준약관 제정 추진 배경은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래분야의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 약관관련 업무수행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및 공정위 주요 중장기 추진 업무로 선정키 위함이다.

구체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준약관 제정·보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제를 보완하여 사업자의 약관심사청구

없이도 공정위가 업계의견을 수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권장표준약관제도의 도입)하고, 사업자(단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 약관법상 표준약관 심사청구 주체를 소비자단체까지 확대하며, 표준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법제 보완을 위하여 “약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분야의 통용 약관의 수집·분석, 업종의 특성 및 관련업계 실태·외국사례, 국내외 판례 분석 의뢰 등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표준약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공정위,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및 (주)한국주택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중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수정·삭제토록 관련 은행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시정대상 약관조항과 유사한 전자 금융서비스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번 시정명령이 나가는 약관조항은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이용자가 전자자금

이체 완료 후 입금은행에 이체의 정상처리여부 확인의무 부과조항 및 은행본점소재지를 소송관할로 하는 재판관할조항이다(불공정약관조항 및 사유 참조).

공정위는 상기 시정조치에 추가하여 시중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 불공정약관의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이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불공정약관 조항 및 사유

■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의 면책조항

- 거래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제공의 곤란 등이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킴
- 손해배상의 면책사유는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면책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명확하여야 함에도 전산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불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업자가 면책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전자자금이체 완료 후에 이용자의 입금은행에 이체의 정상처리여부 확인의무 부과조항

- 고객이 은행의 정상처리통지 확인절차를 거쳐 이체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고객은 전자자금이체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이체가 정상처리 되지 않았음을 예상하기 어렵고 이체상대방의 비밀번호 등 식별번호가 없으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임

■ 본점 소재지 재판관할 조항

- 약관에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찰로서 고객의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로부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아 그동안 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소비자단체, 법률가들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표준약관을 승인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약후 취소시의 과다한 위약금부과와 경기시작 후 이용료 환불 제한,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것 등이다.

I. 기존 골프장 약관 중 불공정항의 조항

가. 요금의 환불

- 이용요금은 환불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수속을 마친 후 티오프(tee-off)전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환불할 수 있다.

-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보조자를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 입장에 관한 모든 이용요금은 후론트 입장명부에 서명하고 수속을 완료한 후에는 고객이 입장료 등의 환불을 요구하여도 이를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예약금 및 위약금

- 컴퓨터로 예약하는 정회원의 경우 예약금이 없으나 단체팀 예약의 경우 회사는 입장료의 30%범위 내에서 예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예약금은 입장료의 30%내에서 선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2일 이전까지 예약취소가 없을시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위약금으로 전환한다.

다. 인명피해의 배상

- 자기자신 및 제3자에 상해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경기자의 책임으로 되며 당 클럽은 일절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경기자가 인접한 훌에서 넘어온 낙구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타구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라. 손해배상

- 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 내장객이 지침한 승용차의 보관은 본인이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승용차의 보관증 발생된 도난의 책임은 당 클럽이 지지 아니한다.

II. 표준약관(안)의 주요내용

가. 골프장예약

- 현재 국내 골프장의 예약은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의 3가지로 받되, 예약기간은 통상 이용당일로부터 1개월~7일전까지이며 대부분의 골프장은 예약금은 받지 않고 있으나 단체팀의 경우 일정예약금을 받는 것이 보편적 예약 운영 형태임

나. 예약금의 환불

- 해당 예약자가 당일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내에 취소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예약금의 반환문제가 발생함

다. 이용요금의 환불

- 사업자나 이용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 납부한 이용요금의 환불을 어떻게 해주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느냐가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갑작스런 일기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진행 여부가 이용자 개인의 성격이나 개성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라. 안전사고 발생

-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의 소재를 두고 분쟁 야기
- 특히, 앞·뒤·인접홀 경기팀의 골프공 타구에 의한 상해, 카트 등 설비조작에 의한 상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간 배상책임의 한계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음

마. 각종 물품의 분실·도난

- 이용자 소지품은 골프채·기방·개인휴대품 등으로 골프채는 사업자에게 인계인수하는 과정이나 경기도중 코스에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기방 등 개인휴대품은 락커실이나 로비에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 분쟁의 소지가 있음

교복 제조·유통업체들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 중인 6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중 교육분야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과정에서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교복 제조업체 3개사와 이들의 전국 총판·대리점들이 담합하여 교복가격을 결정하거나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총 115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고, 법인·단체 4개 및 개인 7인은 고발조치 하였다.

공정위는 교복가격에 대해서 연 2회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사교육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으로 추진중인 학원(학원 프랜차이즈 포함), 학습지, 사이버 교육시장 등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실태조사 내용과 향후 추가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5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

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4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30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2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1년 5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회사 수는 2001년 4월 2일의 624개사에서 642개사로 증가하였다.

◆ 2001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1. 4. 2	편 입				제 외					증 감	2001. 5. 2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전 체	624	23	5	2	30	1	1	4	5	1	12	18
1~4대	187	12	2	-	14	1	-	1	-	1	3	11
5~30대	437	11	3	2	16	-	1	3	5	-	9	7
												444

◆ 2001년 4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30개사(회사설립 23, 주식취득 5, 기타 2)

◎ 제외 : 12개사(합병 1, 지분매각 1, 청산종결 4, 친족분리 5, 기타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주)현대 큐리텔	무선단말기 등 생산판매	회사설립 (100%)	현대울산 종합금융(주)	금융, 보험업	합병 (2001. 3. 31.)	1
	현대 네트웍스(주)	ADSL사업	상동				
LG	(주) 엘지화학	화합물, 화학제품제조 등	회사설립 (16.08%)	(주)데이콤 새틀라이트 멀티미디어 시스템	부가통신사업 · 컴퓨터시스템	청산종결 (2001. 4. 3.)	1
	(주)엘지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제조 · 판매	회사설립 (16.07%)				
S K	오일체인(주)	E-마켓관련 석유제품 중개업	회사설립 (100%)	(주)이오네스	S/W자문 · 개발 및 공급	* 기타 (최대주주 변동)	9
	모비야(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상동				
	베스케어(주)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상동				
	스마틱(주)	서비스부가 통신사업 등	회사설립 (75%)				
	글로벌 신용정보(주)	채권추심, 신용조사업	주식취득 (0%→50%)				
	SK IMT(주)	전기통신산업	회사설립 (61.6%)				
	베넥스인터 내셔널(주)	기타 가공식품도매업	회사설립 (100%)				
	은광가스(주)	도소매업 (엘피지가스)	주식취득 (0%→100%)				
	(주)위즈위드 코리아	E-마켓관련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업	회사설립 (100%)				
	SK미디어(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상동				
한 진	(주)항공종합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동	-	-	-	1
한 화	(주)한화 에스앤씨	S/W개발업	상동	-	-	-	2
	한화통신(주)	별정통신관련 서비스업	상동				
대 립	(주)대림 에이치엔엘	복합운송주선업 외	회사설립 (100%)	-	-	-	2
	베스트풀리미 (주)	전자상거래 외	회사설립 (98%)				

공정위 업무활동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두 산	코리아 티엠에스(주)	서비스업	회사설립 (83%)	-	-	-	4
	아이케이디 밸롭먼트(주)	부동산임대업	회사설립 (100%)				
	아이케이엔터 프라이즈(주)	의료도매	주식취득 (0%→19.6%)				
	(주)윌러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회사설립 (100%)				
동 부	동부부산컨테 이너터미널(주)	부두및관련시설의 운영·관리유지	회사설립 (65%)	-	-	-	1
동 양	(주)온뮤직네 트워크	종합유선방송	회사설립 (100%)	-	-	-	2
	동양시멘트 (주)	수출입업	주식취득 (0%→100%)				
제 일 제 당	씨제이 엔프라니(주)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설립 (100%)	-	-	-	1
동 양 화 학	(주)불스원	화학제품 제조·판매	회사설립 (100%)	-	-	-	1
태 광 산 업	페이토(주)	청소·경비용역업	* 기타 (직권편입)	-	-	-	2
	(주)하나컴	위탁용역업	* 상동				
고 합	-	-	-	고합정밀화학 (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청산종결 (2001. 3. 31.)	△3
				(주)고합 엔프라	"	" (2001. 3. 30.)	
				(주)서울염직	섬유표백 및 가공	" (2001. 3. 31.)	
현대 백화점	-	-	-	한일후드(주)	기타 식품제조	친족독립 경영인정	△5
				(주)대영수산	도매, 상품중개	상동	
				(주)미래문고	서적, 문구류	상동	
				(주)미래문고 신촌	서적, 문구류	상동	
				(주)진명기업	구조금속제조	상동	
코오롱	-	-	-	코오롱 신용정보(주)	신용조사업	지분매각 (100%→45.5%)	△1
계	30			12			18

* 표시 : 2001. 4. 2. 편입체제

※ 표시 : 최대주주가 SK텔레콤에서 전성환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국장급(이사관) 전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겸임

허 선 (정책국장 이사관)

◆ 국장급(부이사관) 전보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남경우 (前 기업집단과장)

◆ 부이사관 전보

국제업무1과장

남선우 (前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단체과장

백승기 (前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송무기획단업무지원

김인준 (前 공정거래20년사편찬팀장)

◆ 과장급(서기관) 전보

국제업무2과장

김재우 (前 국제업무1과장)

기업집단과장

김원준 (前 단체과장)

공정위

장득수 (前 국제업무2과장)

공정위

유재운 (前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서기관 전보

심판관리1담당관

안영호 (前 공정위)

경쟁촉진과

김성하 (前 공정위)

하도급기획과

김의환 (前 제도개선과)

◆ 서기관 승진

공보관실

김영철

총괄정책과

신봉삼

◆ 사무관 전보

기업결합과

이형주 (前 국제업무2과)

회·원·사·소·식

신규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대표 강득수

전자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5-9

개시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